

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공고

「농어촌정비법」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12월 19일

진도군



1. 공고 및 의견제출기간 : 2025. 12. 19. ~ 2026. 1. 2.

2.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현황

구 분	사용허가 내역	비고
사용허가 사유(목적)	가설건축물 진출입로	
사용허가 대상 / 사용면적	고군면 지막리 1770번지 / 1,102.8 m ² 중 35m ²	
사용허가 내용.방법	콘크리트포장	
사용허가 기간	허가일로부터 10년	

3. 열람장소 :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

4. 의견제출 : 위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(방문 또는 우편) 제출하시기 바라며, 기타 사항은 진도군청 건설과 기반조성팀(☎061-540-3485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※ 붙임 : 1. 주민의견서 서식 1부.
2. 위치도 1부. 끝.

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서

성명 및 단체		연락처	
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	
주 소			

주민의견 사항

관련 공고번호	
진도군 공고 제2025 - 1068 호	



위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견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진도군수 귀하

※ 제출된 의견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되지 않거나, 관계주민 등 의견제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견이 미반영 될 수 있습니다.